

“다 싫어요. 지워주세요” 기사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했지만, 이야기를 듣다보면 내심 해당 기사가 삭제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 검색하면 언제든 문제의 기사가 내 눈앞에 등장해서 심사를 불편하게 한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은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인터넷 기사들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SNS에 퍼 나르기까지 한다. 평생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 깔끔하게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한 기업 내 노사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기사가 인터넷신문에서 수차례 보도됐다. 또 감사기관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사가 인터넷에 뿔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도의 기업과 피진정인은 억울하다. 또 관련 기사로 인해 노사협이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우선 보도내용이 허위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기사삭제가 되지 않으면 언론사와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자체가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게 싫은 것이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청구권은 정정 및 반론 등 보도계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사삭제를 원하더라도 우선은 보도계제 청구권을 근거로 해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합의에 따른 기사삭제라는 것이다. 피신청

인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중재부가 청구취지에 없는 기사삭제를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은 명예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고, 인격권 침해로 이유로 한 기사삭제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부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보도내용이 허위이거나 공익성이 없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중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만약 앞의 사례에서 노사갈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노조 조합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하였다면, 또 진정서 제출이 사실이고 기사가 입수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어떨까. 보도내용이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공정한 지면 할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사삭제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와 같은 일방적인 보도는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양당사자 중 한쪽의 편에서 연속보도하는 언론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신중하고 공평했다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무위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삭제를 할 때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요구한다. 언론의 표현을 강하게 보장하는 만큼 쉽게 쓰인 기사가 아니길 바란다.